

## 2023학년도

#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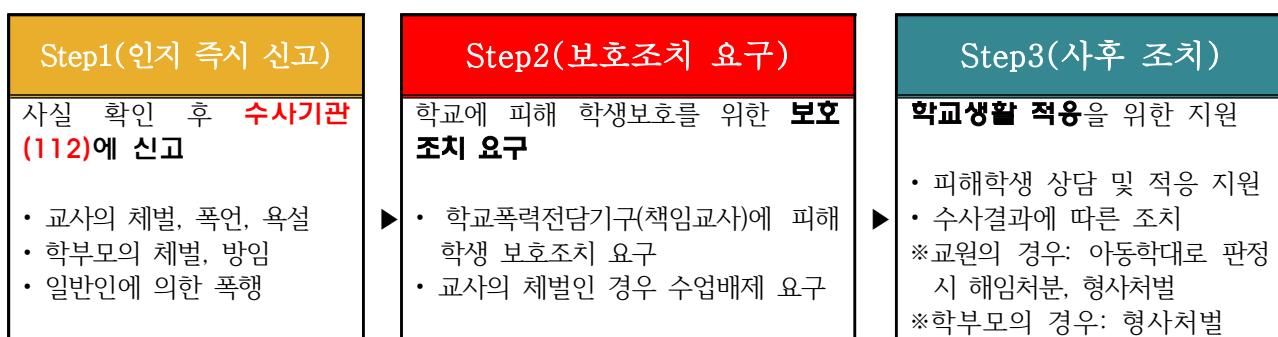
아동에 대한 체벌, 유기, 방임은 아동학대범죄!

### □ 아동(18세 미만)학대란?

구 분	정 의	비고(관련법률)
아동학대	아동(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, 유기 및 방임	아동복지법 제3조
아동학대 범죄	상해, 폭행, 특수폭행, 폭행치사, 유기, 학대, 아동혹사, 체포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, 강간, 유사 강간, 강제추행, 준강간, 준강제추행,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,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, 명예훼손,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, 모욕, 주거침입(주거·신체 수색)의 죄, 강요, 공갈, 재물손괴 등	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

※ 학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, 폭언, 욕설, 방임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학교폭력입니다.

### □ 아동학대 발견(인지)시 조치 요령



### 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

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
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)

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(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, 제10조 제2항)

## □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

-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.
-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(방임)은 아동학대입니다.  
예)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,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
-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(건강)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. 예)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,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
-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.

## □ 『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안내

- 아동학대 치사(제4조) 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아동학대 중상해(5조) : 3년 이상의 징역
- 상습범(제6조) :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
- 친권의 상실(제9조) : 아동학대중상해, 상습범의 경우

## 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

-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.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.
-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.(학교나 교육지원청 상담 신청)
-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.
-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## □ 훈육이란

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

-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(평정심 유지 상태)여야 함
  -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
    -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
    -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(예: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, “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”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)
  - 부적절한 정서반응의 예
    -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, 경멸적, 비난,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

- 잘못된 행동(≠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)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
-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

-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
 -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 
 ('맞을래'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)

-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,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(멍, 손자국, 긁힘 등)이 발생하거나 머리,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

## 참고

##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활용 자료 목록

관련부처	교육 자료 개발 현황
교육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국학부모지원센터(<a href="http://www.parents.go.kr">http://www.parents.go.kr</a>)&gt;자료실&gt;교육자료실</li> <li>● 교육부(<a href="http://www.moe.go.kr">http://www.moe.go.kr</a>)&gt;정책&gt;학부모정책&gt;학부모교육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</li> <li>● 교육부(<a href="http://www.moe.go.kr">http://www.moe.go.kr</a>)&gt;정책홍보&gt;홍보동영상&gt;게시물 ⑤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</li> </ul>
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korea1391.go.kr/new">http://www.korea1391.go.kr/new</a>)&gt;정보&gt;교육자료(인쇄물, 동영상) 또는 홍보자료(인쇄물, 동영상)</li> <li>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<a href="http://central.childcare.go.kr">http://central.childcare.go.kr</a>)&gt;가정양육지원&gt;부모교육자료실</li> </ul>
여성가족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강가정지원센터(<a href="http://www.familynet.or.kr">http://www.familynet.or.kr</a>)&gt;자료공간&gt;일반자료실</li> <li>● 여성가족부(<a href="http://www.mogef.go.kr">http://www.mogef.go.kr</a>)&gt;캠페인&gt;참 좋은 부모 되기 “대한민국 부모학교”&gt;부모교육 배워보기</li> </ul>

※ 위 누리집에서 ‘부모’, ‘아동학대’ 등으로 검색